

#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서완석

##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 김기창 의원 등 6인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20년 4월 13일

나. 회부일자 : 2020년 4월 16일

3.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금의 용도, 이주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기금의 용도를 상위법령 개정에 적합하도록 변경(안 제4조)

나. 민간영역 안전조치에 대한 기금사용 근거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이주비 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용자 등에 관한 근거규정 현행화(안 제5조제1항)

5. 검토내용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에 따라 기금의 용도, 이주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안 제4조의2는 지방자치단체 외 민간시설에 대해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금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5조제1항은 재난발생으로 인하여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이주지원비를 강제대피 또는 강제퇴거되는 주민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규정하였음.
- 안 별표는 재난관리 4단계(예방-대비-대응-복구) 전 분야에 기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재난관리기금 설치 목적에 맞도록 전면 개정함.
-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입법예고('20. 4. 6.~'20. 4. 12.)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

####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 6. 검토의견

-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

행령 개정에 따라 기금의 용도, 이주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